

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안내

(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)

표1) 2024년 장기요양시설급여 고시

※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;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
요양급여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1일	80,630원	74,810원	68,990원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(1일)	10,000원(1인실)		
	식재료비(1일)	1,500원×3식 = 4,500원		
	간식비(1일)	500원×1일/1회 = 500원		
	이/미용료	무료		

표2) 2024년 시설 이용료 세부내역(30일기준) ※기초생활수급자(의료대상자) 무료

구 분			1등급	2등급	3~5등급
총계 (공단부담+본인부담금)			2,418,900원	2,244,300원	2,069,700원
건강보험공단 부담금	요양급여비용(20%)		1,935,120원	1,795,440원	1,655,460원
	요양급여비용(경감12%)		2,128,632원	1,974,984원	1,821,336원
	요양급여비용(경감8%)		2,225,388원	2,064,756원	1,904,124원
본인부담금	일반(20%) 소계		483,780원	448,860원	413,940원
	경감대상자(12%) 소계		290,268원	269,316원	248,364원
	경감대상자(8%) 소계		193,512원	179,544원	165,576원
★ 본인부담금 +비급여 (식비,간식비)	일반(20%) 소계		633,780원	598,860원	563,940원
	경감대상자(12%) 소계		440,268원	419,316원	398,364원
	경감대상자(8%) 소계		343,512원	329,544원	315,576원
비급여	식사재료비	150,000원	1,500원×3식×30일 = 135,000원		
	간식비		500원(일1회)×30일 = 15,000원		
	기타비급여		별도(처방약제비, 외래병원 진료비, 가정간호비용 등)		

※ 기초생활수급자(의료대상자)는 입소자(보호자) 부담이 없습니다 .

※ 입소자 의료기관 이용시 병원비용(약제비), 계약의사 처방에 따른 처방약 비용은 별도 입소자(보호자) 부담입니다.

※ 보호자요청 개인물품구입 및 의료산소사용 등 별도 입소자(보호자)부담입니다.

※ 장기요양등급(시설) 판정을 받지 않으신분은 시설 이용료 100% 입소자(보호자) 부담입니다.

표3) 2024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(“촉탁의”를 “계약의사” 로 변경)

구분	본인부담금(기준)			
	일반20%	감경12%	감경8%	기초수급자
초진비용(17,610원)	3,520	2,110	1,400	0원
재진비용(12,590원)	2,510	1,510	1,000	0원